

IV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HIRA

제 7 장

이학요법료

제 7 장 이학요법료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Exercise Device (하지마비환자의 운동 보조기구)	해당 이학요법료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 제2000-73호)
	병실왕진료(물리치료)	해당 이학요법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사회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의 수기료는 입원료 소정점수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나, 입장료, 관람료 등의 비용은 실비로 본인이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02-13호)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사34 피부광화학요법	협파장대 자외선 B광선요법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1일당] 또는 사34 피부광화학요법[PUVA, Goeckermann, Ingram 등][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2-69호)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1일당]	308나노미터 엑시머 라이트를 이용한 광선치료 Phototherapy using 308nm Excimer Light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1일당]의 해당 항목별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5-100호)
	IPL 표적광선치료 IPL targeted Phototherapy	
	표적자외선치료 Targeted Phototherapy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사102 심층열치료 [1일당]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요법 Deep Penetrating Electro-Magnetic Therapy	사102 심층열치료[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5-77호)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저주파치료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사106 단순운동치료	협응력 운동 (Coordination Exercise), 유연성 운동 (Strength Exercise), 롤러베드, Theraband, 고무밴드 근력운동, ROM Exercise	사106 단순운동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근막 이완치료 Myofascial Release	사106 단순운동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 제2002-98호)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 Nonsurgical Spinal Decompression ☞ 신청시 행위명 비수술적 요추간판 감압술, 비침습적 추간판 감압치료술, 비수술적 디스크 감압치료, 척추의 운동적 견인교정술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7-14호)
사115 재활저출력	레이저 물리치료, Laser Point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IV.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레이저치료	통증유발점 직선편광 근적외선 조사, 성상신경절차단 통증유발점 조사 Stellate ganglion block, Trigger point irradiation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제7장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 1항에 의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가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 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 가능함. (고시 제2011-172호)
사116 운동치료	Medx Dynamic Lumbar Extension, Medx Dynamic Torso Rotation, Isotonic Equipment, Aerobic Equipment, 지속성 관절운동, 지속적인 수동관절운동, CPM(Continuous Passive Motion), Exercise(기계, 기구이용), 연속수동 운동요법, 소아용 자전거	전산화된 등속성 운동기구를 제외한 등속성 운동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근력강화운동과 기능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횟수를 불문하고 사116-가. 복합운동 치료[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포괄적 근력강화 프로그램 (Comprehensive Strengthening Protocol- cybex 장비이용) 싸이백스 운동치료	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등속성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을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횟수를 불문하고 사116-나. 등속성 운동치료[1일당]의 소정 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사117 운동점차단술 [근육당]	7% 페놀을 이용한 신경차단술 (운동점내에 페놀 주입)	사117 운동점차단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보툴리눔 독소 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 Therapy	1. 약제급여 범위내(방광내 주입 제외) 보툴리눔 독소 주사요법 시행시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약제 급여 범위내 시술시는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급여하되 동시에 2개 근육 이상 실시시 제2의 근육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다만, 안면내 주입시는 안면근육의 해부학적 상태 및 시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편측당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나. 보툴리눔독신 주사제 이외에 사용된 약제는 소정 점수에 포함되나, 유도비용인 나611 근전도검사는 별도 산정함. 2. 약제 급여 범위 중 방광내 주입 시는 자351라 요관구절개술(Ureteral Meatotomy)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되, 나773 방광경검사는 소정점수에 포함됨. 3.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약제]에서 환자전액본인부담으로 정한 범위의 시술을 한 경우 행위료는 비급여토록 함. (고시 제2020-243호)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사119 압박치료	간헐적 압박치료, 간헐적 공기압 펌프, 파동형 공기압부종치료, 바스트레인, 공기압마사지, 임파부종물리치료 Sequential Compression	사119 압박치료[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사122 중추신경계 발달재활치료	신생아 보이타치료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사122 ‘주’ 항의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에 해당되므로 사122(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2-13호)
	신경근과제지향접근법 Task-Oriented Neuromuscular Approach(TONA)	사122 ‘주’ 항의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에 해당되므로 사122(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23-147호)
사123 작업치료	작업요법(종이접기), 고무찰흙손운동	사123-가. 단순작업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감각통합치료 Sensory Integartion Therapy	해당 작업치료의 범주에 포함함. (고시 제2008-40호)
	인지재활치료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	사123 해당 작업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 제2009-200호)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일상생활동작 모의훈련 및 교육(ADL Simulation Therapy), 복합 의수족 기능훈련, 단순 의수족 기능훈련, 특수 의수족 기능훈련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A.D.L Device (의식주를 도와주는 기구, 손에 끼우는 스펀 등)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 제2000-73호)
사126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EMG Trigger EMS	사126 기능적 전기자극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동통유발점 차단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의 소정 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사129 호흡재활치료	단순체위배액운동, 복잡체위배액운동, 호흡운동, 흉곽팽창운동(Chest Wall Expansion Exercise), 호흡생체피막이기훈련	유발성 흡기폐활량계 등 기구를 사용한 호흡 운동, 체위배액치료 등 호흡재활치료를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사129 호흡재활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사130 재활기능치료	보행훈련, 체중탈부하 보행훈련, 특수보행훈련, 견인보행기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사130-나. 보행 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트레드밀 운동치료 (트레드밀 장비를 이용하여 보행훈련 실시), 컴퓨터 균형평가훈련 (보행치료의 초기단계)	사130-나. 보행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IV.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제1편 제3부. 비급여목록 : 체외자기장 요실금 치료	만성골반통증후군에 의한 하부요로증상의 체외자기장 치료 Extracorporeal Magnetic Therapy for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from Chronic Pelvic Pain Syndromes	제3부 비급여항목 서33 체외자기장 요실금치료의 범주에 해당됨. (고시 제2007-139호)

IV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HIRA

제 8 장

정신요법료